

행정기관명

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
(경유)
제 목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변경 통보
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당초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

대상 사업명	
근거 법률	
사업 개요	
인허가 일자	

재건축사업의 변경 내역

구분	당초	변경	사유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(인)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		검토자 (직위/직급) 서명		결재자 (직위/직급) 서명	
협조자 (직위/직급) 서명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	